

편지 읽기 인쇄

★ RE: 개별 연구개발과제 간 거래 비용 계상 해석 관련 질의

2021.09.23 16:11:39

보낸사람 : 강상일 <kangsi727@shcpa.co.kr>

받는사람 : 이진한<jin2023145@humetro.busan.kr>;

참 조 : 김철진<luffy1.5@shcpa.co.kr>; 오미숙<oms@shcpa.co.kr>;

안녕하세요?

삼화회계법인 강상일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메일에 기재해 주신대로, 동일과제 참여 연구개발기관간 거래 금지는 개별연구개발과제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따라서, 1세부와 2세부로 구분되어 있을 경우 1세부와 2세부의 연구개발기관 간에는 거래가 허용됩니다.

지난번, 문의주신 경우는 1세부내 주관기관과 공동기관간 거래로 오인하여 답변을 드린 내용이니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삼화회계법인 공인회계사/이사 강상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407(삼성동, 삼화빌딩 8층)

tel) 02-3453-9422~5

fax) 02-3453-9129

mobile) 010-6623-2139

e-mail) kangsi727@shcpa.co.kr (mailto:kangsi727@shcpa.co.kr)

----- 원본 메일 -----

보낸사람: 이진한 <jin2023145@humetro.busan.kr>

받는사람: 강상일 <kangsi727@shcpa.co.kr>

날짜: 21.09.23 14:20 GMT +0900

제목: 개별 연구개발과제 간 거래 비용 계상 해석 관련 질의
반갑습니다.. 부산교통공사 기술연구원 이진한 입니다.

추석 명절은 잘 보내셨는지요?

다름이 아니라 이전에 질의 하였던 우리공사 공무직에 대한 전문가활용비 관련하여
추가 질의 사항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자세한 질의 내용은 첨부 한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질의개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상 동일과제라 함은
총괄 연구개발과제 내에 다수의 연구개발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총괄
연구개발과제를 제외한 개별 연구개발 과제를 말함

따라서 ‘동일과제’ 참여 연구개발기관 간 거래 비용은 계상할 수 없다고 나와 있으나, ‘총괄연구과제를
제외한 개별 연구개발과제’의 단위로 동일과제를 판단 할 경우

이를 「경전철용 고성능·고내구 타이어 및 안정성 강화 헬스 모니터링 기술 개발 사업」에 적용하면

부산교통공사가 총괄연구개발기관인 2세부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주관연구개발기관인 1세부가
동일과제가 아니므로 1세부와 2세부간의 거래 비용은 계상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1세부 연구개발과제에서 전문가활용비를 이용하여 2세부 부산교통공사 경전철운영사업소에 타이어 취거/취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됨.

((질의내용) 개요에서와 같은 해석으로 볼 때 우리공사 공무직(타이어 취부/취거 전문가)에 대한 비용 계상을
총괄 과제 하위 1세부에서 2세부인 우리공사 공무직에게

전문가활용비를 활용하여 계상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세내용은 첨부 한글 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이진한 드림